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9. 20 선고 2022가단111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성

담당변호사 장동찬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2. 8. 23.

판 결 선 고 2022. 9. 20.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1,379,266원 및 그 중 19,928,756원에 대하여 2022. 3. 24.부터 2022. 4. 4.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피고 A 사이에 2022. 1.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1. 13. 접수 제18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1) 원고는 2020. 2. 14. 피고 A과 보증금액 2,000만 원, 보증기한 2022. 2. 11.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이행금액 외에도 이행일 이후에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손해금 및 그 지급에 소요된 비용 기타 원고의 권리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2) 피고 A은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21. 3. 16.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가 2021. 7. 23. C은행에 20,017,73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3) 2022. 3. 23. 현재 원고의 위 대위변제로 인한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대위변제금 잔액 19,928,756원, 가지급금 207,806원, 손해금 1,242,704원 합계 21,379,266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8%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구상금채무 합계 21,379,266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19,928,756원에 대하여 2022. 3.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2. 4. 4.까지는

원고가 정한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피고 A의 모(母)이다.

2) 피고 A은 2022. 1. 13.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접수 제1830호로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나아가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 A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피고 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 B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발생일인 2020. 2. 14. 당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피고 A의 소유가 아니었고, 그 후 2021. 6. 16. 피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존재한 이상 사해행위는

성립하고, 피고 B가 주장하는 위 사정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과거 2017. 9. 27.경에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소외 주식회사 D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2021. 6. 16.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하여도 피고들의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강력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따라서,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판사 김대규

별지

경주시 E 대 761㎡ 중 2/7 지분, 끝.

